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94
----------	-----

2024. 12. 11.(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1월 28일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현장해설, 편의시설, 고용촉진 및 직업 재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현장해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 시각장애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의 시각장애인은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8,669명이며, 이는 전체 등록 장애인 96,896명의 8.9%로 법령에 따른 장애유형(15개) 중 지체(44.8%), 청각(14.7%), 지적(11.7%)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현황 2024. 9. 기준>

(단위: 명)

	충북 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록 장애 인	96,896	40,571	13,387	10,273	3,102	4,925	4,183	2,418	4,565	9,916	7,257	2,659
시각 장애 인	8,669	3,726	1,356	840	273	385	378	218	440	293	534	226

- 시각장애인은 장애유형 중 4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직업 선택, 정보에의 접근 및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들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현장해설, 편의시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함.

##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조문 체계는 다음과 같음.

	조항	규정내용(조 제목)
총칙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체규정	제5조	의료비 지원
	제6조	현장해설 지원
	제7조	편의시설
	제8조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9조	비용 지원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보칙규정	제11조	사무의 위탁
부칙규정	부칙	시행일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시각장애인; , “현장해설”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등 용어에 대해 정의 하였음.

-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 ‘현장해설’: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를 해설하여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안 제5조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 각막이식 수술 지원, 안과 진료 및 그 밖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sup>12)</sup> 및 제34조<sup>13)</sup>에 따른 것으로 법적 및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동일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안 제6조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sup>14)</sup>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 시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북, 제주 등 일부 시도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음.
- 안 제7조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정기적 실태점검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sup>15)</sup>,

---

12)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  
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  
지도를 받게 하는 것

14)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  
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5)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sup>6)</sup> 및 제112조<sup>17)</sup>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의 역할인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 지난 2023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충북도청을 포함한 도 내 18개 관공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춰 볼 때, 본 규정은 필요하며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충청북도 내 관공서\*의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

\*조사 대상 관공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충주시청, 제천시청, 보은군청, 옥천군청, 영동군청, 증평군청, 진천군청, 괴산군청, 음성군청, 단양군청

(단위: 개소, %)

	조사 대상지 개소수	적정 설치율	부적정 설치율	미설치율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관공서 300m이내)	334	0.9	80.2	18.9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관공서 300m이내)	334	5.4	28.4	66.2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 (관공서 300m이내)	139	0.7	99.3	0
인근 대중교통시설 점자블록 연계 설치	15	0	20	80

※자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보건복지부, “2023년 전국 337개 대상시설의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2023. 12.

○ 안 제8조는,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 시각장애인의 고용률이 43%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업종 또한 안마업 등 서비스 업에 편중돼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내용상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16)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7)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

- 안 제9조 및 제11조는,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 내 시각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타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도 담당부서의 의견수렴 및 조례안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현장해설, 편의시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를 해설하여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충청북도(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4.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5.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료비 지원)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 사업
2.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 사업
3. 시각장애인 눈 건강을 위한 안과 진료 사업
4. 그 밖에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충청북도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업대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현장해설 지원)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기적 실태 점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사업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사업
3. 시각장애인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각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제9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각장애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

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첨부제외 사유

-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현장해설 지원, 편의시설 정기적 실태 점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이 요구되지만, 본 조항은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었고, 또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대상,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이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